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포함	2
※ 참고자료	6
1. 하천공사(하천정비사업) 절차	6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6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포함

개정안은 동 법에 수변림(水邊林)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하천 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수변림(水邊林)”이라 함은 하천 및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의 경계 내에 발달한 수목 집단을 말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생략)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⑤ ~ ⑧ (생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수변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¹⁾,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함²⁾.

현행법 제25조³⁾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등에 필요한

- 1)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2) 「하천법」 제2조(정의)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3)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공사를 실시⁴⁾하여야 하며(참고자료1. 하천공사 절차),

동 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 홍수방어 계획, 하천공사 시행,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⁵⁾.

한편, 환경부는 홍수 피해 예방과 하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제방축조, 하도준설 등 하천공사)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 중 수변림⁶⁾을 제거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하천변 식생의 회복·조성 환경이 훼손되고,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서식지 위협을 받는 등 생태계 훼손·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⁷⁾.

4)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5)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수변림(水邊林): 시내나 강 주변에 물의 수질보전을 위해 조성한 숲(산림임업용어사전)
개정안에서는 하천 및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의 경계 내에 발달한 수목 집단으로 정의(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7) “하천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생태계 파괴 vs 홍수대비”, 경남일보, 2025. 4. 8.

“대구 동구청, 금호강 ‘대규모 벌목’ 이어 ‘물길’도 바뀌...”, 평화뉴스, 2025. 1. 8.

“하천 범람 막기 위해 나무 자른다?...전주시 ‘일방적 행정’에 ‘비판’ 쏟아져”, 전북의소리, 2023. 3. 29

이에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것으로,

하천정비공사 시 수변림의 생태·환경적 측면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하천기본계획과 공사시행계획에 별도로 명시하여 반영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수변림의 보전·복원을 포괄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 상 하천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⁸⁾, 현재에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친환경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식재계획,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므로⁹⁾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8)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9) 환경부는 수변림의 위치, 기능에 따라 생태·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치수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보전 및 복원,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참고자료

1. 하천공사(하천정비사업) 절차

